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발전용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규제 강화〉

■ 김동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547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자가소비용직수입자를 발전용과 기타로 구분하여 정의	3
2. 발전용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수출에 대한 승인 근거 마련	9
3.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부과	15
※ 참고자료	19
1. 천연가스 자가소비용직수입자 용도별 현황	1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동아의원 등 13인
2. 제안연월일 : 2025. 4. 2.
3. 회부연월일 : 2025. 4.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서는 발전용, 산업용에 대한 별도의 구분 없이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음. 하지만, 발전용 직수입자는 가스를 이용하여 상업적 경쟁을 통해 전력을 생산·판매하기 때문에 온전한 의미의 자가소비용이라 보기 어렵고, 타사업자와 전력·가스 수급 및 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해 별도의 규제 장치가 필요함.

한편 '25년 이후 평균요금제 대상 발전기가 순차적으로 계약이 종료 되면 직수입 발전 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30년 이후 발전비중의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안정적인 천연가스 및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발전용 자가소비용직수입자”와 “기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로 구분 규정하고(안 제2조제9호 개정, 같은 조 제9호의2 및 제9호의3 신설), 발전

용 자가소비용직수입자로 인한 전력시장 영향과 천연가스 수급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료제출의무 강화, 해외재판매 행위에 대한 승인제 도입 등 주무부처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의5제4항 개정, 제10조의6제4항 및 제54조제1항제18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자가소비용직수입자를 발전용과 기타로 구분하여 정의

개정안은 자가소비용직수입자를 “발전용 자가소비용직수입자”와 “기타 자가소비용직수입자”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발전용 자가소비용직수입자”와 “기타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정의규정을 각각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u><신설></u> 9. “자가소비용직수입자”란 자기가 발전용·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자를 말한다. <u><신설></u> 9의2. ~ 9의6. (생략)	제2조(정의) ----- -----. 1. ~ 8. (현행과 같음) 9.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발전용 자가소비용직수입자”와 “기타 자가소비용직수입자”를 총칭한다. 9의2. “발전용 자가소비용직수입자”란 자기가 발전용 ----- -----. 9의3. “기타 자가소비용직수입자”란 자기가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자를 말한다. 9의4. ~ 9의8. (현행 제9호의2부터 제

현행	개정안
10. (생략)	9호의6까지와 같음) 10.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자가소비용직수입자를 자기가 발전용·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¹⁾,

현행법 시행령은 자가소비용 직수입 천연가스의 용도를 발전용, 산업용, 열병합용, 열 전용 설비용으로 구분하고 있음²⁾. 2025년 5월 기준 25개 업체가 천연가스 자가소비용직수입자로 등록되어 있음³⁾.

자가소비용 직수입 비중은 2015년 기준 국가 전체 도입물량의 5.7%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20년 기준 22.3%를 차지하였으며 2024년에는 25.8%까지 확대되었음.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자가소비용직수입자”란 자기가 발전용·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자를 말한다.

2)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4(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의 용도) 법 제2조제9호에서 “발전용·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발전용: 전기(電氣)를 생산하는 용도
2. 산업용: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의 제조공정용 원료 또는 연료(제조부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연료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용도
3. 열병합용: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용도
4. 열 전용(專用) 설비용: 열만을 생산하는 용도

3) 천연가스 자가소비용직수입자 용도별 현황은 참고자료 1 참조

[천연가스 자가소비용 직수입 현황]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직수입 물량(만톤)	188	216	465	614	728	914	860	738	927	1,211
비중(%)	5.7	6.3	12.3	13.9	17.8	22.3	18.4	15.7	20.6	25.8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 중 용도별 자가소비용 직수입 비중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발전용은 44.2%, 산업용은 40.6%, 열병합용은 15.2%를 차지하고 있음.

[용도별 천연가스 자가소비용 직수입 현황]

용도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발전용	물량(만톤)	75	84	270	313	387	469	441	305	415	535
	비중(%)	39.8	39.2	58.1	51.0	53.2	51.3	51.2	41.4	44.8	44.2
산업용	물량(만톤)	63	79	112	164	212	278	264	291	331	492
	비중(%)	33.4	36.6	24.1	26.6	29.1	30.4	30.6	39.4	35.7	40.6
열병합용	물량(만톤)	50	52	83	137	129	168	156	142	181	184
	비중(%)	26.8	24.3	17.8	22.3	17.7	18.3	18.2	19.2	19.5	15.2
열전용 설비용	물량(만톤)	-	-	-	-	-	-	-	-	-	-
	비중(%)	-	-	-	-	-	-	-	-	-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편, 현행법은 발전용, 산업용 등에 대한 별도의 구분 없이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예를 들어 현행법

제10조의5⁴⁾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천연가스의 수입·수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하고, 계약 체결 후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제10조의6⁵⁾은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수입한 천연가스를 원칙적으로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제10조의9⁶⁾는 자가소비용 직수입 천연가스 대상물량을 설비의 신설·증설이나 연료의 대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신규 수요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발전용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천연가스를 이용하여 상업적 경쟁을 통해 전기를 생산·판매하기 때문에 온전한 의미의 자가소비용이라 보기 어렵고, 천연가스와 전기의 수급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다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보다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4)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5(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 등) ①·② (생략)

③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제3항에 따른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입·수출의 물량 규모 및 시기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⑤·⑦ (생략)

5)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6(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의 처분 제한) ①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수입한 천연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다만, 천연가스의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처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략)

6)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9(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 대상물량) ①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연료의 대체 등에 따라 신규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추가로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참고로, 2022년 기준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는 2,309만 톤으로 천연가스 총수요(4,540만 톤)의 50.9%를 차지하고 있고⁷⁾, 2023년 기준 LNG 발전량은 전체 발전량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⁸⁾, 2024년 기준 전력도매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의 93.3%가 LNG발전기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⁹⁾.

이에 개정안은 자가소비용직수입자를 “발전용 자가소비용직수입자”와 “기타 자가소비용직수입자”로 구분하여 정의하려는 것으로, 발전용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별도의 규제를 통해 천연가스 수급변동성과 전력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용도 중 “열병합용”은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용도로 전기 생산에 있어서 급전지시, 전력시장 판매 등 발전용과 사업영역이 유사하고, “산업용”은 자가발전설비를 통해 생산전력의 일부를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므로¹⁰⁾ 자가소비용직수입자를 일률적으로 발전

7) 출처: 제15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2023~2036), 2023.4.

8) 출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 2025.3.

9) 출처: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10) 「전기사업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태양광 설비 외의 설비를 설치한 자가 해당 설비를 통하여 생산한 전력의 연간 총생산량의 3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전력거래 가능
「전기사업법」

제31조(전력거래) ① (생략)

②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⑦ (생략)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전력거래) ① (생략)

용과 기타로 구분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열병합용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발전용 자가소비용직수입자와 사업 내용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발전용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해서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②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가 해당 설비를 통하여 생산한 전력 중 자기가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2. 태양광 설비 외의 설비(석탄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는 2017년 2월 28일까지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설치공사·변경공사의 공사계획의 인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설치한 자가 해당 설비를 통하여 생산한 전력의 연간 총생산량의 3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③·⑦ (생략)

2. 발전용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수출에 대한 승인 근거 마련

개정안은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수출입계약 체결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사전 통보 규정을 삭제하고, 발전용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수출·해외처분 등의 계약·거래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제4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의5(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 등) ① ~ ③ (생략) ④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제3항에 따른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입·수출의 물량 규모 및 시기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5(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전용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인 천연가스 수출입업자는 천연가스의 수출·해외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또는 거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인기준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현행법¹¹⁾은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한국가스공사)에

11)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5(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

대해서는 천연가스의 수입·수출·수송계약을 체결하려면 도시가스 수급상의 필요성과 가격의 적정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에 대해서는 천연가스의 수입·수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입·수출의 물량 규모 및 시기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고, 계약 체결 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997년 자가소비용 직수입제도 도입 당시에는 천연가스 수출입계약에 대한 사전승인제를 도입하였으나¹²⁾, 2001년 천연가스산업의 경쟁촉진, 천연가스 대량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가스공급능력의 확충을 위해 사후신고제로 전환되었음¹³⁾.

시가스 수급상의 필요성과 가격의 적정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체결하려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이 물량 및 기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 체결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제3항에 따른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입·수출의 물량 규모 및 시기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⑤·⑦ (생략)

12) 1995. 12. 29.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천연가스 수출입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미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단, 1997. 1. 1.부터 시행).

13) 1998. 9. 23. 「석유사업법」 개정 시 천연가스 수출입계약의 사전승인제를 사후신고제로 변경하였음(단, 2001. 1. 1.부터 시행). 이후 2004. 10. 22. 「석유사업법」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전부개정되었고, 2007. 12. 2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천연가스 수출입 관련 조항이 「도시가스사업법」으로 이관되었음.

개정안은 발전용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수출계약·해외처분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발전용 직수입 물량의 해외 재판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발전용 자가소비용직수입자로 인한 천연가스 수급변동성과 전력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현행과 개정안 제도 비교]

현행	개정안
[모든 자가소비용직수입자] - 수입·수출계약 체결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전통보 및 사후신고	[발전용 자가소비용직수입자] - 수출계약 체결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승인
	[발전용 자가소비용직수입자] - 수입계약 체결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후신고 (사전통보 ×)
	[기타 자가소비용직수입자] - 수입·수출계약 체결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후신고 (사전통보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현행법¹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도시가스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천연가스 수출입 물량의 규모·시기 등의 조정 등 필요한 조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발전용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수출계약을 사전승인제로 변경하는 것은 천연가스 공급의무가 없고 자기소비 물량만 수입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둘째,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승인대상으로 천연가스의 수출, “해외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또는 거래를 규정하고 있는데, 해외처분의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사전승인제로 변경할 경우 해외처분 문구 삭제 등 자구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셋째, 개정안은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수입·수출계약 체결

14) 「도시가스사업법」

제40조(조정명령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시가스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필요한 조정(調整)을 명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0조(조정명령) ①·② (생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1.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조정
2.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에 관한 조정
3. 천연가스의 수출입 물량의 규모·시기 등의 조정
4.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교환에 관한 조정
5.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의 교환에 관한 조정

④·⑤ (생략)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사전통보 조항을 삭제하고 있는데,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전용 자가소비용직수입자를 포함한 모든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수입·수출 예정 물량 및 시기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없게 된다는 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승인대상이 아닌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수출입의 경우¹⁵⁾ 사전 통보 없이 사후 신고만 하게 되어 기타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에 대한 규제가 현행보다 완화되게 되는데 이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의무 책임이 없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해 수출 및 해외처분을 승인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 자율성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천연가스 수출 승인제로 전환하는 것은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사업활동을 제약하고 천연가스 관련 신산업의 성장과 신규 수요 창출을 위축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15) 발전용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수입계약 및 기타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수입·수출계약

민간LNG산업협회는 최근 5년간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LNG 수입량 대비 수출량 비중은 0.1%~1.2%에 불과하고, 개정안의 규제 도입은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에 제약을 발생시키며 승인 시간 소요로 인해 추가적인 사익 침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반면,

한국가스공사는 발전용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수입계약에 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발전용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3.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부과

개정안은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의 처분 제한과 발전용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수출 승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6제4항 및 제54조제1항제18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의6(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의 처분 제한)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0조의6(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의 처분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처분제한과 제10조의5제4항의 승인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은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u>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7. (생략) <u><신설></u>	제54조(과태료) ① ----- ----- -----. 1. ~ 17. (현행과 같음) <u>18. 제10조의6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u>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10조의6¹⁶⁾은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수입한 천연가스를 원칙적으로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천연가스반출입업자가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내에 반입한 천연가스를 가스도매사업자를 제외한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및 천연가스반출입업자(이하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의 처분 제한과 발전용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수출 승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의 국내 처분 및 발전용 직수입 물량의 해외 재판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자가소비용직수입자로 인한 전력시장 영향과 천연가스 수급 변동성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16)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6(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의 처분 제한) ①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수입한 천연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다만, 천연가스의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처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천연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천연가스반출입업자는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내에 반입한 천연가스를 가스도매사업자를 제외한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가스공급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증발가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먼저, 개정안은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자료제출의무만 규정하고 있고 자료제출요구의 주체 및 근거가 미비하므로 자료제출 규정의 일반적인 입법례를 참고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음으로, 안 제54조제1항제18호는 자료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법 제54조17)는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17)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공급규정) ① ~ ⑦ (생략)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한 공급규정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의 산정, 요금의 납부방법, 비용의 부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①·② (생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에 대하여 가스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의 보호 및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표할 수 있다.

제54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1의2. 제10조의12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1조제4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시공자
- 2의2. 제20조제8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 2의3.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공급규정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가스사용자의 요구가 있음에도 공급규정의 사본을 교부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4. 제21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 4의2. 제28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
5. 제30조의5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④ ~ ⑦ (생략)

문 의 처
02)6788-5464

※ 참고자료

1. 천연가스 자가소비용직수입자 용도별 현황('25.5월 기준)

연번	사업자	등록일	용도
1	포 스 코	'05.05.10	산업용
2	SK E&S	'05.08.12	발전용
3	GS칼텍스	'09.06.25	산업용
4	중부발전	'14.11.25	열병합용
5	GS EPS	'16.10.28	발전용
6	나래ES	'16.11.23	열병합용
7	파주ES	'16.11.23	발전용
8	GS파워	'18.01.16	열병합용
9	S-Oil	'18.03.09	산업용
10	포스코인터내셔널	'18.11.14	발전용
11	신평택발전	'19.04.25	발전용
12	SK에너지	'20.03.12	산업용
13	고려아연	'20.10.06	산업용
14	한화솔루션	'21.05.14	산업용
15	현대케미칼	'21.11.04	산업용
16	SK하이닉스	'22.05.16	산업용
17	여주ES	'22.10.27	발전용
18	서부발전	'22.12.22	열병합용
19	롯데이네오스화학	'23.09.04	산업용
20	남부발전	'23.09.08	발전용
21	SK 인천석유화학	'23.10.30	산업용
22	통영에코파워	'23.10.31	발전용
23	울산 GPS	'24.03.04	발전용
24	SK 멀티유틸리티	'24.03.04	열병합용·열전용설비용
25	동서발전	'24.11.27	발전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